

구 매 규 격 서

Commodity Descrip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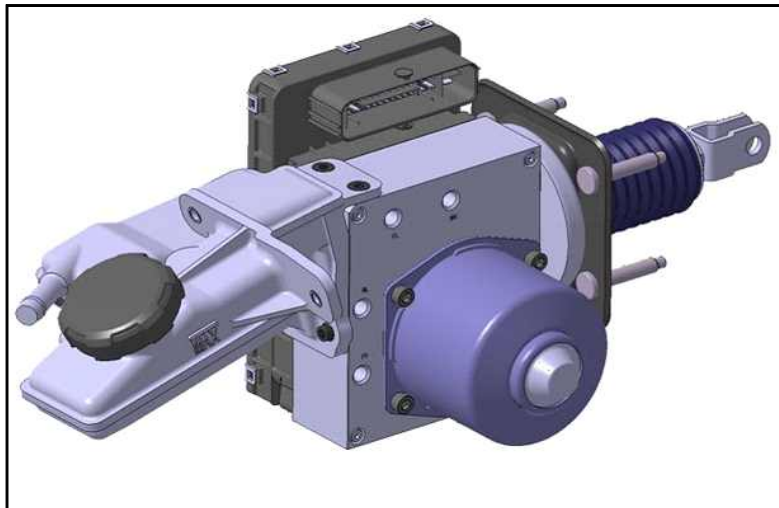
품목번호 Item No.	관세분류번호 HSK No.	정부물품분류번호(10자리)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(ten-digit)	품 명 (Description)	단위 (Unit)	수량 Q'ty
1		4111369801	48V IDB 제동시스템 통합 성능 시험기 - HILS (48V IDB System Endurance Tester)	Set	1

I. 용도 (End-user's Use)

1. 시험장비명 : 48V IDB 제동시스템 통합 성능 시험기 - HILS

2. 장비 개요

- 본 시험기는 전기 모터와 밸브를 통해 유압을 제어함으로써 차량의 제동을 수행하는 통합 전자 제동 장치(IDB, Integrated Dynamic Braking)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로, IDB의 외형은 <그림 1>과 같다.



<그림 1> 통합 전자 제동 장치(IDB)의 외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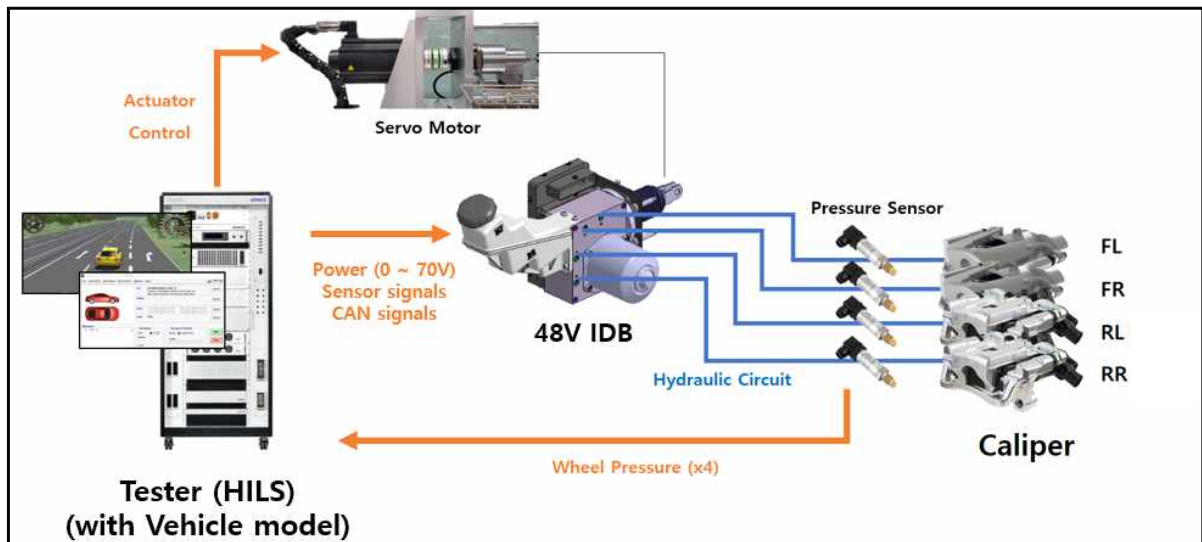
- 기존 12V 체계의 시스템이 아닌 48V 체계의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다.
- 실제 차량과 유사하게 모사된 환경에서 반복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, 차량 모델이 탑재된 HILS(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) 형태로 구성된다.

II. 장비의 구성 (Configurations of Goods)

1. 주 장비 : 시험기 1 EA

- 본 시험기는 HL 만도에서 보유 중인 테스트 벤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

야 하며, 테스트 벤치의 구성은 <그림 2>와 같다. IDB 제어기는 테스트 벤치에 장착되므로, 커넥터 사양 및 핀 맵 정보를 제외한 하드웨어 도면은 제공하지 않는다.



<그림 2> 시험기와 테스트 벤치 간 구성

2. 부속 장비 : 호스트 PC 1 EA, 모니터 2 EA

- 호스트 PC는 운영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야 하며,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이어야 한다.
- 시험기 구동을 위한 화면과 자동화 구동 현황의 동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호스트 PC의 모니터는 2 개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Ⅲ. 성능 및 규격 (Performance and Specification)

- 시험기의 주 장비와 부속 장비는 함께 전달되는 시험기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.

Ⅳ. 관련법령에 따른 필수 면허·자격 사항(Compulsory Licenses and Qualifications required by relevant laws or regulations)

- 비해당

V. 「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

-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입찰자는 현장여건,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수요기관은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·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·점검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·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·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VI. 기타 조건 (Remarks)

1. 입고 장소

-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만도 글로벌 R&D센터 B1층 Brake검증시험실

2. 입고 기한

- 계약 후 90일 이내

3. 검수

- 입고 전 내부적으로 공급자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에 검수를 실시하고,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자체 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사전 제공해야 한다. (자체 검수 결과 미제출 또는 불합격 시, 입고 불가)
- 자체 검수 이후 시험기 입고 시 수요자와 합동 검수를 실시해야 하며, 원활한 검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자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4. 문서 제출

- 공급자는 시험기 제작을 위한 도면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, 제출 기한은 입고 후 1주 이내로 한다.

5. 보증 및 기타

- 보증기간 : 납품 검사 완료 후 1년
- 공급자는 국내의 사후관리 지원 인력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서비스 요청이 있을 시, 공급자는 48시간 내에 사후관리(AS)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6. 교육 프로그램

-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